

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. 2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변화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따른 날로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,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, 관련 조례의 미비한 법규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저소득주민의 복지 관련 조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명 및 목적에 “복지증진”이라는 문구 사용(제명 및 안 제1조)
-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포함하도록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함(안 제2조)
- 지원내용에 보장구 지원,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,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수준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신청, 조사, 추천의 내용을 규정하고, 지원예산에 대한 한계, 추천의 공정성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개정근거(관련근거)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조

4. 개정조례안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(2009년 본예산 편성)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(2009. 1. 15. ~ 2009. 2. 4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· 규칙심의회 심의 · 의결 (2009.2.12)
- 다.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자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3.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
5.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
6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
7. 예기치 못한 재해·재난 사고 및 실업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
8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

제3조(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급식 관련 경비 지원
 2. 교육 관련 경비 지원
 3. 명절보상품 지원
 4. 월동대책비 지원
 5. 긴급구호비 지원
 6. 무의탁노인 지원
 7. 보장구지원
 8.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
 9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·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
 10.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.

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,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장, 학교장,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, 보훈단체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.

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.